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관련

민간자격등록을 위한 현황파악 및 제반사항





경계선지능 청년들에게 꽃길은 있는가?



- 대상자과 가정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짐
- 사회적 관심과 유관기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임상적 활동과 누적 자료를 활용한 **체계적 지도자 관리**가 주목받고 있음
- 기관의 성과와 신뢰도에 따라서 자격검정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좌우됨
- 청소년과사람사랑에서도 오랫동안 지도자 관리 및 역량강화 필요성 대두
- 임상과 연구내용을 검정기준에 맞게 재정립, 구조화하여 실질적 검정기준을 확보해야 함
- 자격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함께 자격의 검정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

2. 현황파악 - 타기관

"느린학습자(경계선) 관련 민간자격 현황"

등록연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유형	지역
2022	느린학습자(경계선)인지학습상담사	(주)대교	법인	서울
2022	느린학습자전문지도자	(주)학지사에듀	법인	서울
2020	경계선지능상담사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개인	서울
2017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전문가	단국대학교	법인	경기
2016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아동권리보장원	법인	서울
2015	경계선발달전문가	(주)연아혜윰	법인	서울

2. 현황파악 - 타기관

등록연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급수	직무내용
2022	느린학습자(경계선) 인지학습상담사	(주)대교	1급	• 느린학습자(경계선)를 선별 심리검사를 시행 및 사정하고, 개인별 인지학습 프로그램 치료 설계, 개발, 상담을 실행한다.
			2급	 느린학습자(경계선) 이해를 바탕으로 시중의 프로그램 중 적절한 내용을 선재하고 활용하여 인지학습상담을 실행한다.
2022	느린학습자 전문지도자	(주)학지사에듀	단일	 느린 학습자의 인지학습, 정서사회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교육, 심리상담 활용기술을 가지고 느린 학습자의 인지학습, 정서사회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응능력 향상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을 수행, 상담기관 및 유관단체에 교육, 상담을 수행한다.
2020	경계선지능상담사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1급	 경계선지능인 정책 개발 및 행정업무 총괄 경계선지능인의 제 문제에 대한 개입 2급 및 3급 경계선지능 상담사 교육 및 훈련 현장인력 전문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2급	 경계선지능인 상담의 전반적 업무 수행 경계선지능인의 각 문제영역에 대한 전문적 개입 심리검사 해석 및 활용 경계선지능 관련된 독자적 연구 설계 및 수행 3급 경계선지능인 상담사 교육 및 훈련
			3급	 기본적인 경계선지능인상담 업무수행 경계선지능인 관련 프로그램 실행 경계선지능인 상담 관련 외뢰체계를 활용 경계선지능인 상담 관련 제반 행정적 실무 담당

2. 현황파악 - 타기관

등록연도	자격명	자격관리기관	급수	직무내용
/ /01/	학습장애·난독증 ·경계선지능전문가	단국대학교	1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실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부진 또는 위험군 아동·청소년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관련 시설 운영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전문가 훈련 및 감독 등의 업무 수행 부모 교육과 상담, 관련 자문
			2급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실시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을 지닌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부진 또는 위험군 아동·청소년 개인 및 집단에 대한 학업 평가 및 교육 학습장애·난독증·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부모 교육과 상담, 관련 자문 등의 업무 수행
2016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아동권리보장원	단일	• 지적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운영, 지도
2015	경계선발달전문가	(주)연아혜윰	1급	• 지적장애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경계선지능아동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에서 개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운영, 지도
			2급	 경계선발달전문가 1급의 지도를 받아 경계선 발달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2. 현황파악 - 내부

"법인 목적사업별 관계 및 목표"



"사업 주체 및 상관성"



2. 현황파악 - 내부

"최근 법인 문건 [느린학습자 지도사 자격 관리/운영 규정] 분석"

- 1. 민간자격정보서비스(<u>https://pqi.or.kr/</u>)에 업로드 되어 있는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
- 2. 위의 예시문에서 기관명(재단법인 청소년과 사람사랑 자격검정본부)과 기본사항만 일부 수정됨
- 3.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불필요한 요소가 포함됨(예: 제11장 실기시험 채점에서 '실기시험 작품'과 같은 용어는 부적합)
- 4. 해당 문건에 명시된 <주의사항>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주의사항〉

- 1. 상기 내용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형식적인 부분만 참고하시고 실제 규정은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람.
- 2. 상기 내용을 그대로 차용함에 따라 추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3. 상기 내용만으로는 자격관리운영이 불가능하며, 자격관리운영에 필요한 그 외의 사항*은 자체적으로 정하여 규정에 포함하시기 바람. *예시: 출제, 채점, 검정시행, 자격발급 및 사후관리 등
- 5. 현재 형식적인 부분만 완성되었을 뿐,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사실 근거가 필요
- 6. 자격관리운영이 미흡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운영에 필요한 추가적 사항이 필요 (출제 범위와 내용, 채점의 기준, 검정 시행의 구체적 내용, 자격 발급 후의 자격증 관리 및 대상자 관리 등의 요소)

3. 제반사항 - 개념

"민간자격 등록제도"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

민간자격의 종류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

3. 제반사항 - 절차

구분	처리기관	내용	소요기간
1단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1개월
	주무부장관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2단계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2개월 내외
	주무부장관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3단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주무부장관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연이 전달)	1개월 내외
4단계	신청인	신청인 (등록)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5단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계			4개월 내외

※ 유의사항

-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신청가능 하며, 21일부터 월 말일까지는 신청 불가능 함
- 또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 완료됨
- '소관부처 지정 오류'에 따른 자문위 절차 또는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될 경우 상기 소요기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 미납' 또는 '납부확인 증빙서류 미제출'시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함

3. 제반사항 - 필요서류

구분	구비서류	세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1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 . 단체(미등기) -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1부 	
회 원 가 입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 -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 - 임대차계약서 기타 무상사용 등 : 상기 서류 및 장소 사용에 관한 당사자 간 협약서
8	• (법인기관만 해당)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1부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정보마당→양식 및 서식]에서 '결격사유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외 모든 등기 임원 작성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1부	• 등록신청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예시 참조)
등록신청	• (해당 자격만 제출)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시 해당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인가·등록·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 학력인정시설 지정서, 문해교육프로그램 지정서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등 「수상레저안전법」 -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수상레저교육사업 등록증 등

3. 제반사항 - 주요내용

<주요 논의 대상>

- 1. 자격의 종목 및 등급
- 2. 자격의 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에 필요한 인력현황
- 3. 자격의 관리운영조직에 관한 사항
- 4. 자격 평가내용과 취득의 구체적 사항

자격명칭

- 기존의 타 자격과 명칭 중복 금지
-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전문자격과 비슷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사용 금지

관리운영 조직 • 검정기획 담당, 인쇄 담당, 채점 담당 등 각 업무를 분담하기 위한 조직에 관한 사항

직무내용

- 자격증 목적
- 해당 민간자격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일

검정담당 인력 • 관련 업무 분담과 실행 내용

검정방법

- 검정기준, 검정과목(필기/실기)
-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교육이수, 이수기준, 평가기준, 평가방법

자격증 유효기간 • 해당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증이 몇년간 유효한지 또는 자격증의 갱신은 어떻게 하는지

응시자격

- 민간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 법령 근거 내 자유

사후관리 (보수교육) 자격증 취득 후 보수 교육을 통한 자격 취득 대상자 사후관리 내용